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재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2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7.

발 의 자 : 김재원 · 황운하 · 황 희  
신장식 · 이해민 · 서왕진  
장종태 · 강준현 · 황명선  
박정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, 창의성 및 심미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사업이 실시되고 있음.

그런데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함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미흡한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, 종합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 전용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, 국가 등으로 하여금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

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의2, 제5조의2제4항 및 제6조 제1항 제6호의2 신설).

##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“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. 이 경우 인력과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가.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·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

나. 문화예술 분야별 실습 및 체험을 위한 전용 공간

다. 문화예술교육사 등 전문인력의 배치

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의 기준

제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,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<신 설>

제6조(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 설>

7. ~ 11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6조(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

1. ~ 6. (생략)

6의2.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7. ~ 11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